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 력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며, 그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1.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및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거나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기한 및 절차규칙은 이 장에 의하여 규율되는 모든 분쟁에 적용된다.

3. 중재패널의 조사결과·결정 및 권고는 이 협정상의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4. 이 장의 규정은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이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원용될 수 있다. 중재패널이 이 협정의 규정이 준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책임 있는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안에서 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5. 양 당사국 및 이 장에 따라 임명된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공법의 관습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제 20.3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동 협정에 따라 교섭된 협정 또는 승계 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2. 일단 분쟁해결절차가 제20.6조에 따라 개시되었거나 또는 분쟁해결절차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개시되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의 패널설치를 위한 요청으로 세계무역기구협정상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 20.4 조 협 의

1. 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조치나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의무와 불합치하거나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언제나 타방 당사국과의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요청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답변하며, 요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내에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

3. 양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모든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이를 위하여 양 당사국은,

가. 그 조치가 이 협정의 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타방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협의에서 교환된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 20.5 조 주선·조정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언제라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다. 동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조정 및 중개의 절차와 특히 이러한 절차 동안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 장의 규정에 따른 다음 단계의 절차 또는 양 당사국이 선택한 분쟁해결절차에서의 그 밖의 절차에서 일방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20.6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에서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진행되는 동안에도 주선·조정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

제 20.6 조 중재패널 요청

1. 협의요청접수일 후 45일 이내에 제20.4조에 따라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 당사국은 서면으로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중재요청은 문제가 된 조치의 확인과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적시를 포함한 제소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요청서가 전달된 때, 중재패널은 설치된다.

4.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 20.7 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제20.6조에 규정된 중재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국은 제20.6조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1인의 위원을 임명한다. 양 당사국은 두 번째 위원 임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세 번째 위원을 공동으로 임명한다.

2. 양 당사국이 두 번째 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재패널의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국은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인의 지명자로 구성된 각 당사국의 명단을 교환한다. 의장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명단으로부터 추첨에 의하여 임명된다. 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의장은 타방 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단으로부터 추첨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패널의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승계인은 원 위원의 임명을 위하여 명시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고, 승계인은 원 위원의 모든 권한 및 임무를 가진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원 패널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날에 시작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날에 끝나는 기간 동안 일시 정지된다.

4. 중재패널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객관성·신뢰성·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되며, 중재 절차 동안 동일한 기초에 따라 행동한다. 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 패널위원이 이 조에 따라 임명된다. 또한, 패널의장은 일상 거주지를 일방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일방 당사국에 의하여 고용될 수 없다.

제 20.8 조 절차의 종료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공동으로 의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 20.9 조 중재패널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부속서 20A의 모범절차규칙을 따르고,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중재패널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

나.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다. 각 당사국이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

라. 각 당사국의 서면 입장, 구두진술의 서면, 그리고 중재패널로부터의 요청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된 후, 사호를 조건으로 하여 공표될 수 있다.

마.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비정부기관이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데 중재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의견서를 제공하겠다는 요청을 고려할 수 있다.

바. 각 당사국이 제20.11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대하여 논평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사. 비밀정보의 보호

2.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모범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제 20.10 조 정보 및 기술적 조언

1. 중재패널은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획득된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은 양 당사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재패널은 당사국에 의하여 제기된 과학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사안에 관한 사실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로부터 서면으로 된 자문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일방 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절차 동안 중재패널을 지원할, 그러나 중재패널이 내릴 결정에 대하여 투표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

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전문가를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 20.11 조

최초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패널 보고서를 이 협정의 관련 조항,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과 제20.10조에 따라 중재패널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마지막 위원이 선정된 후 90일 이내에, 다음을 포함한 최초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사유와 함께 법률 및/또는 사실의 조사결과

나. 이 협정의 이행·해석 또는 적용에 대한 패널의 판정, 또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또는 이 협정상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또는 위임사항에서 요청된 그 밖의 판정, 그리고

다. 분쟁해결 수단으로 패널의 권고가 있는 경우, 그 권고

3. 양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논평을 제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서면논평이 제3항에 규정된 대로 접수된 경우,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로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그러한 서면논평을 고려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한 추가적 검토를 할 수 있다.

제 20.12 조

최종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은 최초 보고서의 제출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전달된 때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된다.

제 20.13 조 최종 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의 최종 보고서는 양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에,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가. 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 수단, 그리고

나. 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양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또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될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방법은, 언제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 20.14 조 불이행 -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양 당사국이,

가. 최종 보고서 발행 후 30일 이내에 제20.13조제2항가호에 따라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나. 제20.13조에 따라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제20.13조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앞서 언급된 수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소 당사국은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보상 조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보상에 관하여 상호 만족할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효과를 갖는 혜택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통지를 그 이후 언제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동 통지에는 제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소 당사국은 이 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과 중재패널이 제6항에 따라 보고서를 발행한 날 중 후에 도래하는 날에 혜택의 정지를 시작할 수 있다.

3. 정지되는 혜택은 이 협정상 피소 당사국에 부여된 혜택으로만 제한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정지시킬지를 검토함에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사안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의 혜택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은 같은 분야의 혜택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에 불합치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제거된 때까지만 또는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한 때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

6.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정지하겠다고 제안한 혜택의 수준이 명백히 과도하거나,

나. 자국이 중재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동 사안을 판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원 중재패널은 재소집된 후 30일 이내에 당사국에 대하여 판정을 내린다.

7. 중재패널이 원 위원들로 재소집될 수 없는 경우, 제20.7조에 규정된 중재패널 임명 절차가 적용된다.

제 20.15 조

공식 언어

1. 모든 절차 및 중재패널에게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한다.
2.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원 문서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당사국은 이를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동시에 제출한다.

제 20.16 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의 비용 및 그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같은 몫으로 부담한다.
2. 각 당사국은 중재절차에서 발생한 자국의 경비 및 법률 비용을 부담한다.